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
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여순사건 희생자·유족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신고기간을 재설정하고, 여순사건 위원회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위원회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규정 신설(안 제3조의2)

-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 근거 마련

나. 추가 신고접수를 받기 위한 희생자·유족 신고기간 재설정(안 제10조제2항)

- 신고 기간을 ‘개정된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’로 재설정

다.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(유족대표) 위촉권자 명확화(안 제13조제5항)

- 보고서작성기획단 단원 중 유족대표에 대한 위촉권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, 위원장(국무총리)이 위촉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0000. 0. 0. ~ 0. 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
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여수·순천 10·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(실무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

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
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
3.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증인·참고인이거나 증인·참고인이었던 경우
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

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

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
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”을 “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”로 한다.

제13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유족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위원의 제척·기피·회피) ① 위원회 위원(실무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제척(除斥)된다.</u> <u>1.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</u> <u>2.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</u> <u>3.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법제7조에 따른 증인·참고인이거나 증인·참고인이었던 경우</u> <u>4.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·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</u> <u>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(忌避) 신청을 할 수 있고,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. 이 경우 기피 신청의</u>

	<u>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</u> <u>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공정한 심의·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·의결에서 회피(回避)해야 한다.</u>
제10조(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) ① (생략)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<u>2022년 1월 21일부터 2023년 1월 20일까지</u> 해야 한다. ③ ~ ④ (생략) 제13조(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생략) ⑤ 기획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. 1. ~ 2. (생략) 3. <u>유족 대표</u> 4. (생략) ⑥ ~ ⑦ (생략)	제10조(희생자 및 유족의 신고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이 영 시행일부터 2023년 12월 31일 -----. ③ ~ ④ (현행과 같음) 제13조(여수·순천 10·19사건진상조사보고서작성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 ⑤ ----- -----. 1. ~ 2. (현행과 같음) 3. <u>유족 대표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</u> 4. (현행과 같음) ⑥ ~ ⑦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	
연 락 처	(044) 205 - 3261